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제출년월일 : 1995. 5. 6.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향교재단 소유 토지중 일반서민에 임대중인 주거용 건축물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으로 임대가격 상승 방지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주요골자

향교재단 소유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9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치 않고 세율을 3/1,000 으로 일괄 적용

3. 조례(안)내용

○ 별도 붙임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9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신 설 〉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